

## [별첨 1] 합병의 개요

### 1. 합병의 목적

하나금융 25 호기업인수목적(주)(이하 "피합병회사" 또는 "소멸회사")는 다른 기업과의 합병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정관상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합병을 결정하였으며, (주)피아이가(이하 "합병회사" 또는 "존속회사")는 머신비전(Machine Vision), 영상처리(Image Processing), AI(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 등을 기반으로 이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 전략산업 분야의 제조 지능화(Manufacturing Intelligence) 구현에 필수적인 검사 및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개발하여 판매를 영위하는 주권비상장법인으로 회사의 대외 인지도 및 신뢰도 확대를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경영 및 조직체계의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상장에 따른 회사 홍보 및 우수 인력 확보를 목적으로 SPAC 합병을 통한 코스닥 상장을 결정하였습니다.

### 2. 합병의 방법

(주)피아가가 하나금융 25 호기업인수목적(주)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하나금융 25 호기업인수목적(주)는 해산합니다.

### 3. 합병의 요령

#### (1) 피합병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배정에 관한 사항

피합병회사인 하나금융 25 호기업인수목적(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식 보유 주주에 대하여 하나금융 25 호기업인수목적(주)의 보통주식(액면금액 100 원) 1 주당 합병회사 (주)피아가의 보통주식(액면금액 100 원) 1.4852220 주를 교부합니다.

#### (2) 교부금의 지급

합병법인 (주)피아가가 피합병법인 하나금융 25 호기업인수목적(주)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법인 (주)피아가는 피합병법인 하나금융 25 호기업인수목적(주)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것 외에 별도의 합병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자기주식 등 소유현황 및 처리방침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 (주)피아가와 피합병법인 하나금융 25 호기업인수목적(주)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금번 합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사의 주주 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발생할 경우 해당주식은 각 사의 자기주식이 되며,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신주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합병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5 제 4 항과 동법 시행령 제 176 조의 7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 (4) 합병비율

가. 합병비율 :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합병비율은 1: 1.4852220 로 함.

#### 나. 합병비율의 산출근거

합병법인(주권비상장법인)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76 조의 5 제 1 항 제 2 호 나목 및 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 4 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권비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 과 4 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로 평가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주권상장법인)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176 조의 5 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23 년 05 월 23 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23 년 05 월 23 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3 년 05 월 22 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 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증가, 최근 1 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증가, 최근일의 증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 분의 30 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본 건 합병에서는 2.41% 할증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5)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의 종류와 수

합병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6,389,425 주

#### (6) 채권자 보호절차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에 따라 2024년 04월 15일부터 2024년 05월 16일까지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7) 합병계약서상의 계약 해제조건

제14 조 (계약의 해제)
14.1 해제의 사유.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합병기일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1) 당사자들 모두가 서면으로 본 계약의 해지에 합의한 경우. 다만,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져서 본 계약을 합의에 따라 해제하게 된 경우, 이를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제로 본다.
(2) 당사자 일방이 행한 진술 및 보증이 중요한 점에서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거나,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중요한 점에서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본 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경우. 다만, 본 계약을 위반한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어느 당사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위와 같은 절차의 개시에 관한 신청이 법원에 제기되거나 그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또는 그 신청이 있는 경우
(4) 본 계약 제 6 조에 따른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을 득하지 못하거나,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가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불법화되는 것이 확실해지는 경우
(5) 본 계약 제 6 조에 따른 주주총회에서 각 당사자가 본 계약을 승인한 후 당사자들 중 어느 당사자의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이 해당 당사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33.33 이상(33.33%)에 해당하는 경우
(6) 본 계약 제 13 조에서 정한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음이 명백하며, 그 선행조건 성취의 혜택을 볼 해당 당사자가 그 선행조건을 면제하지 않고 본 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경우
14.2 해제의 효과.
(1) 본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본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제 14 조 내지 제 18 조 기타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또는 그 성질상 해제 이후에도 존속하는 것으로 예정된 조항 또는 권리·의무는 계속 그 효력을 유지한다.

(8)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사항

- 주식매수예정가격 : 6,733 원

- 반대이사통지와 매수청구의 세부 내용은 동봉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주요일정

구분		합병회사((주)피아아이)	피합병회사(하나금융 25 호기업인수목적(주))
이사회결의일		2023년 05월 23일	2023년 05월 23일
합병계약일		2023년 05월 23일	2023년 05월 23일
합병변경계약(1 차) 체결일		2023년 10월 31일	2023년 10월 31일
합병변경계약(2 차) 체결일		2023년 11월 24일	2023년 11월 24일
합병변경계약(3 차) 체결일		2024년 01월 29일	2024년 01월 29일
합병변경계약(4 차) 체결일		2024년 01월 31일	2024년 01월 31일
합병변경계약(5 차) 체결일		2024년 02월 15일	2024년 02월 15일
합병변경계약(6 차) 체결일		2024년 03월 07일	2024년 03월 07일
합병변경계약(7 차) 체결일		2024년 03월 15일	2024년 03월 15일
주주확정기준일		2024년 03월 05일	2024년 03월 05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24년 03월 06일	2024년 03월 06일
	종료일	2024년 03월 12일	2024년 03월 12일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일		2024년 03월 28일	2024년 03월 28일
합병반대 이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4년 03월 28일	2024년 03월 28일
	종료일	2024년 04월 11일	2024년 04월 11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24년 04월 12일	2024년 04월 12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24년 04월 12일	2024년 04월 12일
	종료일	2024년 05월 02일	2024년 05월 02일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24년 04월 15일	2024년 04월 15일
	종료일	2024년 05월 16일	2024년 05월 16일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예정일		2024년 05월 16일	2024년 05월 16일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2024년 05월 14일
	종료일	-	2024년 06월 07일
합병기일		2024년 05월 17일	2024년 05월 17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4년 05월 20일	2024년 05월 20일
합병등기에정일자		2024년 05월 20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4년 06월 10일	-

주)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합병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신주권교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투자자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합병의 개요는 2024년 03월 15일자로 전자공시된 (주)피아아이의 [정정]증권신고서(합병)를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합병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공시의 합병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안내문

###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제 374 조의 2 및 동법 제 522 조의 3 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 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합병 당사회사 중 주권비상장법인인 (주)피아이이의 경우,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매수대금은 2024 년 05 월 16 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2. 주식매수 예정가격

구 분	내 용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6,733 원
산출근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합병법인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 : 4 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출된 가액
협약이 성립되지 아닐 경우	해당 가액으로도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당해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행사절차

#### 가. 반대의사의 통지방법

「상법」 제 522 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5 에 의거,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4 년 03 월 05 일) 현재 (주)피아이이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 영업일(2023 년 04 월 11 일)까지 (주)피아이이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 3 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 2 영업일 전까지 위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주)피아이이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 나. 매수의 청구 방법

「상법」 제 522 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5 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2024 년 04 월 12 일 예정)부터 20 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주)피아이이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주)피아이이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 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위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 다. 주식매수 청구기간

「상법」 제 522 조의 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5 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주)피아이이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 일 이내(2024.04.12 ~ 2024.05.02)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라. 접수장소

-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614, 더퍼스트타워 2 차 19 층(영천동)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증권회사

### 4. 기타 사항

가. 주식매수청구권자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 이후 주식매수청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나. 주식매수대금 지급예정일 : 2024 년 05 월 16 일(목)

#### 다. 주식매수대금 지급방법

- 명부주주 :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

라.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 등은 시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거래하시는 증권회사의 사정에 따라 제출시한이 1~2 일전에 마감될 수 있으니 거래하고 있는 증권회사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본인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귀사의 이사회결의사항(합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대합니다.

주 주 번 호	
소 유 주 식 수	주
반대의사 주식수	주

20    년    월    일

주 소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연락전화번호 :                    )

주식회사 피아이어 대표이사 귀하

..... 절취선 .....

주 식 매 수 청 구 서

본인은 귀사의 합병에 반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매수를 청구합니다.

주 주 번 호	
소 유 주 식 수	주
반대의사표시주식수	주
주식매수청구주식수	주

20    년    월    일

주 소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연락전화번호 :                    )

주식회사 피아이어 대표이사 귀하

..... 절취선 .....

매수가격 조정 신청서

본인은 「상법」제 374 조의 2 제 3 항에 의거 산출된 기준매수가격에 반대하여 동규정에 의거하여 매수가격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주 주 번 호	
소 유 주 식 수	주

20    년    월    일

주 소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 :                   (인) (연락전화번호 :                    )

주식회사 피아이어 대표이사 귀하

별첨3. 정관변경(안) 신규조문 대비표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목적
<p><b>제10조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b></p> <p>① 회사는 상법에서 정한 절차 및 내용에 따라 특정목적의 자사 주식 취득과 특정 목적이 없더라도 배당 가능 이익 범위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p> <p>② 회사가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p> <p>③ 회사가 임직원 상여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도 있다.</p> <p>④ 회사가 스톡옵션제도 도입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가 있으며, 당사가 보유하는 주식을 일정조건 충족한 우수인재에게 부여할 수도 있다.</p> <p>⑤ 회사는 본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이사회결의에 따라 소각 또는 처분할 수 있다.</p> <p>회사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허용하며,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자유롭게 자본감소를 제외한 주식의 소각을 할 수 있다.</p> <p>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보통주식 2. 취득가액의 총액한도: 배당가능이익 한도이내 3.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4. 취득하고자 하는 주식비율: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비율로 취득 가능</p>	<p><b>제10조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b></p> <p>① 회사는 상법 <b>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 및</b> 내용에 따라 특정목적의 자사주식 취득과 특정 목적이 없더라도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b>처분할 수 있다.</b></p> <p>② 회사가 경영권방어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b>처분할 수 있다.</b></p> <p>③ 회사가 임직원 상여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b>처분할 수 있다.</b></p> <p>④ 회사가 스톡옵션제도 도입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가 있으며, <b>회</b>사가 보유하는 주식을 일정조건 충족한 우수인재에게 부여할 수 있다.</p> <p>⑤ 회사는 본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자기주식은 이사회결의에 따라 소각 또는 처분할 수 있다.</p> <p><b>회사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허용하며,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자유롭게 자본감소를 제외한 주식의 소각을 할 수 있다.</b></p> <p><b>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보통주식</b> <b>2. 취득가액의 총액한도: 배당가능이익 한도 이내</b> <b>3.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b> <b>4. 취득하고자 하는 주식비율: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비율로 취득 가능</b></p>	<p>관련 법령 근거 추가 및 조문 보완</p>
<p><b>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b></p> <p>①~③ &lt;생략&gt;</p>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임직원외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제3항 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이사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⑤~⑧ &lt;생략&gt;</p>	<p><b>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b></p> <p>①~③ &lt;생략&gt;</p>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b>회사 이사를 제외한 자</b>에게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이사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다.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⑤~⑧ &lt;생략&gt;</p>	<p>조문 수정</p>
<p><b>제13조 [신주인수권]</b></p> <p>① &lt;생략&gt;</p> <p>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p> <p>1~3. &lt;생략&gt;</p> <p>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5~7. &lt;생략&gt;</p> <p>③~④ &lt;생략&gt;</p>	<p><b>제13조 [신주인수권]</b></p> <p>① &lt;생략&gt;</p> <p>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p> <p>1~3. &lt;생략&gt;</p> <p>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b>또는 재무구조 개선</b>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b>개인</b>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5~7. &lt;생략&gt;</p> <p>③~④ &lt;생략&gt;</p>	<p>조문 수정</p>
<p><b>제28조 [주주의 의결권 및 의결정족수]</b></p> <p>①~④ &lt;생략&gt;</p> <p>⑤ 다음 사항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p> <p>1~7. &lt;생략&gt;</p> <p>8. 주식매수선택권에 따른 행사자가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p> <p>9. 상법 제 375조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p> <p>10. 기타 본 회사의 정관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p>	<p><b>제28조 [주주의 의결권 및 의결정족수]</b></p> <p>①~④ &lt;생략&gt;</p> <p>⑤ 다음 사항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p> <p>1~7. &lt;생략&gt;</p> <p>8. 주식매수선택권에 따른 행사자가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p> <p><b>9. 상법 제 375조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b></p> <p><b>9. 기타 본 회사의 정관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b></p>	<p>상법 규정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적은 조문 삭제</p>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목적
<b>제28조 [주주의 의결권 및 의결정족수]</b> ①~⑤ <생략> ⑥ 다음 사항은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다 1. 이사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2.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3. 분할 또는 분할합병(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포함)으로 각 주주의 부담이 가중될 때 4.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⑦ 주주전원의 서면동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 있다.	<b>제28조 [주주의 의결권 및 의결정족수]</b> ①~⑤ <생략> ⑥ <b>다음 사항은 총주주의 동의로 결의한다</b> 1. <b>이사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b> 2. <b>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b> 3. <b>분할 또는 분할합병(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포함)으로 각 주주의 부담이 가중될 때</b> 4. <b>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b> ⑦ <b>주주전원의 서면동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 있다.</b>	상법 규정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적은 조문 삭제
<b>제33조 [대표이사의 선임]</b>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단, 이사가 2인 이하일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대표이사가 수명일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 각자 또는 공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한다. 단, 이사가 2인 이하일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b>제33조 [대표이사의 선임]</b>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b>단, 이사가 2인 이하일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b> ② 대표이사가 수명일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 각자 또는 공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한다. <b>단, 이사가 2인 이하일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다.</b>	상법 규정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적은 조문 삭제
<b>제37조 [이사의 임기]</b>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임기는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b>제37조 [이사의 임기]</b>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b>임기가 최종의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 그</b>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조문 수정
<b>제40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b> ① <생략>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생략>	<b>제40조 [이사회 구성과 소집]</b> ① <생략>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b>3일</b>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생략>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위한 소집 통지일 기한 변경
<b>제42조 [이사회 의결사항]</b>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7. <생략> 8. 주요 사규의 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9~14. <생략>	<b>제42조 [이사회 의결사항]</b>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7. <생략> 8. <b>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제개정하도록 정한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b> 주요 사규의 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9~14. <생략>	조문 수정
<b>제44조 [감사의 수와 선임]</b> ① 회사는 감사를 1인 이상 둘 수 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⑤ <생략>	<b>제44조 [감사의 수와 선임]</b> ① 회사는 감사를 1인 <b>으로</b> 둘 수 있다. <b>다만,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b> ②~⑤ <생략>	상법 규정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적은 조문 삭제